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55

발의연월일: 2021. 1. 18.

발 의 자:김승남·신정훈·서동용

이성만 • 박영순 • 홍성국

기동민 • 아수진비 • 고영인

용혜인 · 김철민 · 김영배

최종윤 · 조오섭 · 이재정

소병훈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포함될 당위성이 있는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고자 함.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없음.

그러나 일부 피해자가 배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액수보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더 많아 두 집단간의 배상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추진력 약화의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현행법에서는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국가와 지자체 간의 운영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이에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자 함.

현행법은 추모사업과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재단에 출연 및 보조 방법과 기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모

사업과 재단의 사업에 4·16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재단에 기한 없는 출연을 보장하고자 함.

끝으로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이에 진상조사 후에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방법을 명시하고자함.

주요내용

- 가. 피해자의 정의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16세월호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제2조제3호).
- 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4 · 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 6조의2 신설).
- 다.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함(안 제35조).
- 라. 국가등이 시행해야 하는 추모사업 등의 목적에 '안전사고 예방교

- 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1항).
- 마. 국가등이 시행하는 추모사업 등에 추모기념관의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신설).
- 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하는 추모기념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 사. 4·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하고, 5년의 지원 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 아. 4·16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및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포괄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자. 공공기관이 수집 및 보존하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기록물임을 명시하고,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사본을 4·16재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제1항 신설).
- 차. 피해자에게 공공기관이 수집 및 보존하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

기관 및 4·16재단에 피해자의 열람요구에 대한 협조 및 편의제공의무, 피해자가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요구와 관련하여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안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부상 잠수사"라 한다)
- 마.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이하 "부상 자원봉사자"라 한다)
- 바. 4·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 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학생
- 사.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 제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배상금 등의 추가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배상금의 추가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에 따른 지급결 정을 할 때 적용한 배상금 산정기준이 국가를 상대로 한 4·16세월 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산정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추가지급신청에 따라 국가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재산정해 제15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급 신청은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배상금 차액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추가지급 및 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 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등이"를 "국가가"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방교육을"을 "예방교육 및 진 상조사 후속 연구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추모기념관의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
- 6. 그 밖의 추모,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연구 관련 사업

② 추모기념관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 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 5.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제5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조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송부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공공기관 및 4·16재단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 및 4·16재단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해당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4·16재단은 피해자에게 필요

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피해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요구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공개 및 송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절차,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 및 지정절차, 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	3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
	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u>부상을 입은 잠수사(공무</u>
	원을 제외한다. 이하 "부상
	<u> 잠</u> 수사"라 한다)
<u> <신 설></u>	<u>마. 4·16세월호참사와 관련</u>
	된 구조・수습 및 지원활
	<u>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u>
	<u>봉</u> 사자(이하"부상 자원봉
	사자"라 한다)
<u> <신 설></u>	<u>바. 4·16세월호참사 당시 경</u>
	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학생
<u><신 설></u>	<u>사.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u>
	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라. (생 략) 4. • 5. (생략)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등) ①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생 략)

<신 설>

2. • 3. (생략) ② ~ ⑤ (생 략) <신 설>

교직원

아. (현행 라목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배상금 등의 추가 지급에 관한 사항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배상금의 추가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할 때 적용한 배상 금 산정기준이 국가를 상대로 한 4 · 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 해배상 등 소송의 확정판결에 서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산정 한 기준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추 가지급신청에 따라 국가는 법 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재산정 해 제15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 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 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은 4 · 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급 신 청은 확정판결 후 6개월 이내 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상금 차액 산정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가지급 및 신청에 <u>관하여는</u>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 ① (현행과 같음)

(2)
<u>국가가</u>
100억/호마기에 E 기케/ ①

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u>예방</u>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u>3.</u> · <u>4.</u>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 <u>예방</u>
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	구를-

- 1. ~ 2. (현행과 같음)
- 3. 추모기념관의 4·16세월호참
 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
 사 후속 연구
- 4.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의 추모, 해상 안전사 고 예방교육 및 연구 관련 사 업
- ② 추모기념관은 4·16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 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1	 _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 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th>
 설>

 4. (생
 략)

 ② (생
 략)

 <신</td>
 설>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1. ~ 3. (현행과 같음) 4.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의 수집·보존·관리·전시·
1. ~ 3. (현행과 같음) 4.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의 수집·보존·관리·전시· 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
1. ~ 3. (현행과 같음) 4.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의 수집·보존·관리·전시· 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 에 관한 사업
1. ~ 3. (현행과 같음) 4.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의 수집·보존·관리·전시· 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 에 관한 사업 5.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1. ~ 3. (현행과 같음) 4.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의 수집·보존·관리·전시· 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 에 관한 사업 5.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6. (현행 제4호와 같음)

지료에 대한 조치) 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 다)은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며, 4·16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사본

- 을 4·16재단에 송부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사 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공공 기관 및 4·16재단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 및 4·16재단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해당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4·16재단은 피해자에게 필요한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 및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④ 피해자는 제2항에 따른 열 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 공요구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 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공개

및 송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절차, 제4항에 따른 대리인 의 범위 및 지정절차, 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